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685
----------	------

발의연월일 : 2013. 12. 20.

발 의 자 : 유승희 · 유대운 · 이춘석
양승조 · 진성준 · 진선미
김현 · 서영교 · 박남춘
박영선 · 박범계 · 이찬열
김광진 · 백재현 · 홍익표
인재근 · 이언주 · 한정애
장하나 · 설훈 · 김관영
은수미 · 노웅래 · 노영민
강창일 · 우윤근 · 최민희
임수경 · 최원식 · 김현미
전해철 · 이종걸 · 최규성
의원(33인)

제안이유

이 법 제44조의 2에 따른 인터넷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시행하는 소위 임시조치는 누구든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권리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해당 정보의 권리침해 여부에 상관 없이 무조건 해당 정보가 30일 동안 차단되도록 하고 있어 인터넷 게시 정보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검열로 작용하고 있음.

이 제도에 따라 국내 4대 인터넷 포털이 지난 5년간 차단한 인터넷 게시물의 건수는 82만여 건수에 이르며, 2008년 대비 2012년의 인터넷 게시물 차단 건수는 300% 가깝게 폭증하여 인터넷 정보 게시자의 권리침해는 물론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또한, 현행 임시조치 제도는 정보에 차단에 대한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차단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조차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보 게시자와 차단 요청자 사이의 권리보호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고, 우리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가 근본적으로 침해받고 있음.

이와 함께 이 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게시물 차단 등에 대한 보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 제도의 관리감독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조차 관련 통계조차 관리하지 못하여 제도 운영에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

박근혜 대통령 역시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으로 ‘인터넷표현의 자유 증진’을 제시하면서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약속한 바 있음(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289쪽).

이에 인터넷 게재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이 명백할 경우 해당 정보의 차단 등의 조치와 함께 차단된 정보의 해제조치, 관련 당사자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 차단 등의 조치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방송통신위원회 보고 의무화 등을

규정하여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인터넷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게재자가 차단 등의 조치에 대하여 자신이 게재한 정보가 정당한 권리행사인 것임을 소명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30일 이내에 차단 조치된 정보에 대한 해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해제예정일을 요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44조의2제4항).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차단 등의 조치에 대하여 매년 2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8항).

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고받은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9항).

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이 명백한 인터넷 게시 정보에 관하여는 임의로 해당 정보를 차단하거나 차단해제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정보에 대하여는 차단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3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삭제”를 “차단”으로, “삭제등”을 “차단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삭제”를 “차단”으로, “삭제·임시조치 등의”를 “차단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4항”으로, “이로”를 “해당 정보 및 차단 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정보게재자가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자신이 제재한 정보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조치를 30일 이내에 해제하여야 하고 즉시 해제예정일을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게재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해제예정일 전에 정보통신

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항 및 제4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고 연락처 게시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내용·절차 등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⑧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2회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방송통신위원회는 제8항에 따른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4조의3의 제목 중 “임시조치”를 “차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를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임의로 차단 등의 조치를 하거나 제44조의2제4항의 해제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를 “차단, 해제요청의 거부, 차단요청의 거부, 해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44조의2제2항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차단조치된 게시물에 대한 해제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

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p> <p>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u>삭제</u>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u>삭제등</u>”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u>삭제등</u>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u>삭제·임시조치</u>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u>정보통신서비스</u> 제공자는</p>	<p>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p> <p>① ----- ----- ----- ----- ----- ----- -----차단----- -----차단등----- -----.</p> <p>② ----- -----차단----- -----차단등----- ----- -----.</p> <p><u><삭 제></u></p>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정보게재자가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자신이 제재한 정보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조치를 30일 이내에 해제하여야 하고 즉시 해제예정일을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신 설>

<신 설>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게재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해제예정일 전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제2항 및 제4항-----
-----해당 정보 및 차단 등으로-----
-----.

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항 및 제4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고 연락처 게시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내용·절차 등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⑧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2회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⑨ 방송통신위원회는 제8항에 따른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4조의3(임의의 차단 등) ① --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임의로 차단 등의 조치를 하거나 제44조의2제4항의 해제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44조의2제2항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차단조치된 게시물에 대한 해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차단, 해제요청의 거부, 차단요청의 거부, 해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
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
다.